WORLD TRADE ORGANIZATION

G/TBT/N/JPN/892/Add.1

2026-11-10

(26-7981)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부록

일본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2026 년 11 월 10 일자 다음 통보문을 회람한다.

제목: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산업성(METI) 고시 개정

부록 사유:	
[ ]	의견 마감일 변경 – 날짜:
[ ]	통보 조치의 채택 – 날짜:
[X]	통보 조치의 공표 – 날짜: 2026-03-31
[X]	통보 조치의 시행 – 날짜: 2026-04-01* (표시 요구사항 제외**) *새로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연도는 2028 회계연도이다. **표시 요구사항의 시행일은 2027 년 4 월 1 일이다.
[X]	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[1]: https://www.kanpo.go.jp/old/20260331/20260331g00075/20260331g000750729f.html
[ ]	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– 날짜: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:
[ ]	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[1]: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 (해당될 경우):
[ ]	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[1]:
[ ]	기타:

[1] 최종/수정 조치 및/또는 관련 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, PDF 첨부파일,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.

내용: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및 비화석에너지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률(1979 년 법률 제 49 호, 이하 "에너지절약법")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은 가스 또는 석유 온수기를 포함하여 에너지절약법에 따른 정령으로 지정된 각 유형의 기기의 에너지효율 성능 향상에 관하여 제조업자/수입업자(이하 "제조업자 등")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
또한 경제산업대신은 가스 또는 석유 온수기를 포함한 특정 기기의 에너지효율에 관하여 제조업자 등이 표시하여야 할 정보를 정한다.

아울러 에너지효율 기준은 각 유형의 특정 기기 중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 성능과 그 밖의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다.

급탕 부문은 주거용 건물 에너지 소비의 약 30%를 차지하여 가정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이다. 이 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산업대신은 가스 온수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준을 제안한다.

_____